

공구우먼 / 2026.05.12 [정정] 주주총회소집공고

정정 신고 (보고)

2026년 05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4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주주총회 소집공고 1. 일시	임시주주총회 일시 변경	1. 일 시 : 2026년 05월 13일 (수요일) 오전 09시 30분	1. 일 시 : 2026년 05월 27일 (수요일) 오전 09시 30분
주주총회 소집공고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행사기간 변경	2026년 5월 3일(일) 09시 ~ 2026년 5월 12일(화) 17시까지	2026년 5월 17일(일) 09시 ~ 2026년 5월 26일(화) 17시 까지
Ⅲ.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도메인 주소 수정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Ⅲ.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추가에 따른 변경	주3) 정정 전	주4) 정정 후

주1) 정정 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공구우먼"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09women Co., Ltd." (약호 09WOMEN) 라 표기 한다.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 <u>주식회사 나인앤컴퍼니</u> "라 한다. 영문으로는 " <u>Nine & Company Inc.</u> "라 표기한다. 다만, 대외적 약호로 " <u>Nine & Co.</u> "를 사용할 수 있다.	사명 변경을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재정립 및 사업 다각화 방향성 선제적 반영. 로고는 "X & Co."를 사용 예정으로, 이는 로마숫자 IX를 활용한 글로벌 감성브랜드 전략화 예정이며, 최상위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코자 함.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류·도·소매, 제조업 2. 전자상거래업 3. 무역업 4. 잡화업 5. 부동산 임대업 6. 식료품 수입업 및 판매업 7.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판매업 8.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업 및 판매업 9.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10. 각 호에 관련 된 유통업 및 물류관련 사업 11. 각 호에 관련 수출입업 및 수입물품 판매업 12.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2조 (목적) 당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류, <u>패션잡화, 액세서리</u> 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2. 전자상거래업, <u>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u> 3. 무역업 4. 잡화업 5. 부동산임대업 6. 식료품수입업 및 판매업 7.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판매업 8.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업 및 판매업 9. <u>플랫폼 개발 및 운영업</u> 10. 어플리케이션, <u>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개발, 공급 및 운영업</u> 11. <u>인공지능(AI) 기반 패션·커머스 기술의 개발, 공급 및 서비스업</u> 12. <u>데이터베이스구축, 데이터 처리 및 정보 서비스업</u> 13. <u>브랜드,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개발, 취득, 관리, 사용 허락, 양도 및 관련사업</u> 14. <u>브랜드 라이선싱 및 브랜드 사업화 관련 사업</u> 15. <u>패션잡화의 제조, 도·소매, 수출입 및 유통업</u> 16. <u>자회사, 관계회사 및 기타 회사의 설립, 출자, 지분취득 및 관리업</u> 17. <u>국내외회사, 조합, 펀드, 프로젝트 및 자산에 대한 투자업</u> 18. <u>투자자 회사의 설립 및 운영, 국내외 유가증권 및 지분 투자업</u> 19. <u>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사업개발 및 경영컨설팅업</u> 20. 각 호에 관련 된 유통업 및 물류관련 사업 21. 각 호에 관련 된 수출입업 및 수입물품 판매업 22.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디지털 플랫폼·시·글로벌 패션잡화 사업 확장 및 투자자 회사(유한회사) 설립을 통한 다각적 투자 활동 근거 마련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4조 (공고방법)</p> <p>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09women.net)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제4조 (공고방법)</p> <p>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xnc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사명 및 브랜드 변경에 따라 공식 도메인을 www.ixnco.com 으로 변경</p>
<p>제11조 (주식매수 선택권)</p> <p>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p>	<p>제11조 (주식매수 선택권)</p> <p><u>전 임직원(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부여 대상,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조건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u></p>	<p>전 임직원을 스톡옵션 부여 대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인재 유치 및 임직원 동기 부여 강화. 세부 부여 기준은 이사회 규정으로 위임하여 운영상 유연성 확보</p>
<p>제17조 (전환사채 발행)</p> <p>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환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제17조 (전환사채 발행)</p> <p>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 <u>1,0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환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류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향후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선제적 발행한도 변경을 통한 정관 정비</p>
<p>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 <u>1,000억원을</u>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류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전환사채 한도 상황과 상대적 균형을 맞추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사채 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 유연성 확보. CB·BW 한도의 불일치 해소</p>
<p>제32조 (이사의 수)</p> <p>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2조 (이사의 수)</p> <p>당 회사의 이사는 <u>7인 이상 10인 이하</u>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사업구조 고도화 시 이사회 규모 확대 필요에 따른 정관 정비</p>
<p>제 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p> <p>(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p>	<p>제 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p> <p>(1) 이사의 보수한도는 <u>연간 총액 금 20억 원 이내</u>로 한다. 다만,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본 보수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상법 제388조에 따른 정관 정비</p>
<p>부 칙</p>	<p>제1조 (시행일)</p> <p>본 정관은 2026.05.13. 부터 개정 시행한다.</p>	<p>시행시기 추가</p>

주2) 정정 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1조 (상호)</p> <p>당 회사는 "주식회사 공구우먼"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09women Co., Ltd." (약호 09WOMEN)라 표기한다.</p>	<p>제1조 (상호)</p> <p>당 회사는 "<u>주식회사 나인앤컴퍼니</u>"라 한다. 영문으로는 "<u>Nine & Company Inc.</u>"라 표기한다. 다만, 대외적 약호로 "<u>Nine & Co.</u>"를 사용할 수 있다.</p>	<p>사명 변경을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재정립 및 사업 다각화 방향성 선제적 반영. 로고는 "IX & Co."를 사용 예정으로, 이는 로마숫자 IX를 활용한 글로벌 감성브랜딩 전략화 예정이며, 최상위 글로벌 브랜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코자 함.</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2조 (목적)</p> <p>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류 도·소매, 제조업 2. 전자상거래업 3. 무역업 4. 잡화업 5. 부동산 임대업 6. 식료품 수입업 및 판매업 7.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판매업 8.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업 및 판매업 9.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10. 각 호에 관련 된 유통업 및 물류관련 사업 11. 각 호에 관련 수출입업 및 수입물품 판매업 12.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p>제2조 (목적)</p> <p>당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류, <u>패션잡화, 액세서리</u>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2. 전자상거래업, <u>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u> 3. 무역업 4. 잡화업 5. 부동산임대업 6. 식료품수입업 및 판매업 7.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판매업 8.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업 및 판매업 9. <u>플랫폼 개발 및 운영업</u> 10. 어플리케이션, <u>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u>개발, 공급 및 <u>운영업</u> 11. <u>인공지능(AI) 기반 패션·커머스 기술의 개발, 공급 및 서비스업</u> 12. <u>데이터베이스구축, 데이터 처리 및 정보 서비스업</u> 13. <u>브랜드,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개발, 취득, 관리, 사용 허락, 양도 및 관련사업</u> 14. <u>브랜드 라이선싱 및 브랜드 사업화 관련 사업</u> 15. <u>패션잡화의 제조, 도·소매, 수출입 및 유통업</u> 16. <u>자회사, 관계회사 및 기타 회사의 설립, 출자, 지분취득 및 관리업</u> 17. <u>국내외회사, 조합, 펀드, 프로젝트 및 자산에 대한 투자업</u> 18. <u>투자자 회사의 설립 및 운영, 국내외 유가증권 및 지분 투자업</u> 19. <u>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사업개발 및 경영컨설팅업</u> 20. 각 호에 관련된 유통업 및 물류관련 사업 21.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수입물품 판매업 22.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p>디지털 플랫폼·AI·글로벌 패션잡화 사업 확장 및 투자자 회사(유한회사) 설립을 통한 다각적 투자 활동 근거 마련</p>
<p>제4조 (공고방법)</p> <p>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09women.net)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제4조 (공고방법)</p> <p>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xandc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사명 및 브랜드 변경에 따라 공식 도메인을 www.ixandco.com 으로 변경</p>
<p>제11조 (주식매수 선택권)</p> <p>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p>	<p>제11조 (주식매수 선택권)</p> <p><u>전 임직원(정규직 및 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부여 대상,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조건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u></p>	<p>전 임직원을 스톡옵션 부여 대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인재 유치 및 임직원 동기 부여 강화. 세부 부여 기준은 이사회 규정으로 위임하여 운영상 유연성 확보</p>
<p>제17조 (전환사채 발행)</p> <p>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환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후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제17조 (전환사채 발행)</p> <p>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 <u>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환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류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향후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선제적 발행한도 변경을 통한 정관 정비</p>
<p>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후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 <u>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u>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류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전환사채 한도 상황과 상대적 균형을 맞추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사채 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 유연성 확보. CB·BW 한도의 불일치 해소</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32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u>7인 이상 10인 이하</u> 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구조 고도화시 이사 규모 확대 필요에 따른 정관 정비
제 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 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한도는 <u>연간 총액 금 20억 원 이내</u> 로 한다. 다만,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본 보수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388조에 따른 정관 정비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6.05.27. 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시기 추가

주3) 정정 전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기운	1976-01-31	사내이사	-	임원	이사회
민은기	1982-05-25	사내이사	-	-	이사회
김익희	1988-08-20	사내이사	-	-	이사회
진광용	1991-03-25	사내이사	-	-	이사회
도윤상	1975-09-20	사외이사	-	-	이사회
이병두	1956-02-29	사외이사	-	-	이사회
박수중	1975-05-23	사외이사	-	-	이사회
이상훈	1969-07-22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김도훈	1983-09-27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박치욱	1978-11-28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총 (10)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 용	
이기운	現 씨씨지인베스트먼트아시아(주) 대표이사	前 前 前	씨지에스씨아이엠비증권(주) IB부문 아시아 대표 씨아이엠비증권(주) IB부문 대표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주식부문장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
민은기	現 AMD파트너스(주) 대표이사	前 現	한양증권(주) CIC대표 AMD파트너스(주) 대표이사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
김익희	現 (주)엘링크 대표이사	現 現	(주)지에프리테일 대표이사 (주)엘링크 대표이사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 경제학과 졸업	-
진광용	現 (주)엘링크 총괄사업본부장	現 現	(주)지에프리테일 브랜드사업총괄 (주)엘링크 총괄사업본부장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도윤상	現 리핀코트코리아(주) 대표이사	前 前 現	한국엑센츄어(주) (Accenture) 한국올리버와이먼(주) (Olliver Wyman) 리핀코트코리아(주) (Lippincott Korea) 대표이사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
이병두	現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	前 前	삼정 KPMG 부회장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	-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現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정치학 박사	
박수중	現 대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	現 前 前	대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TAX 본부장 한울회계법인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
이상훈	現 (주)에스엘엠앤씨 대표이사	現	(주)에스엘엠앤씨 대표이사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졸업	-
김도훈	現 (주)사이렉스페이 대표이사	現 現	(주)사이렉스페이 대표이사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개발원 디지털전자금융 이사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졸업	-
박치욱	前 아르쥬청담 대표이사	前	아르쥬청담 대표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기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민은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익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진광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도윤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병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수중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상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도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치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p>[사외이사 후보자 도윤상]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향후 성장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p> <p>[사외이사 후보자 이병두] 사외이사로서 오랜기간동안 사회 유수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p> <p>[사외이사 후보자 박수중] 본 박수중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오랜기간 동안 공인회계사로서 근무해왔으며, 회계 및 재무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p>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p>[사내이사 후보자 이기운, 민은기, 김익희, 진광용] 각 후보자는 회사의 사업 구조와 운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실행력 있는 전략 추진,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또한, 금융, 투자, 패션, 유통에 대한 뛰어난 역량과 글로벌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p> <p>[사외이사 후보자 도윤상, 이병두, 박수중] 각 후보자는 독립적인 시각과 균형 있는 판단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경영 전반에 대한 조언과 점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p> <p>[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이상훈, 김도훈, 박치욱] 후보자는 기타비상무이사로서 그 동안의 회사를 경영하면서 쌓은 노하우 및 IT전문가로</p>

근무한 경험(김도훈)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년 4월 28일

보고자

(서명 또는 날인)

이 기 문

(주)공구우먼 귀중

사내이사 이기운 확인서_26 04 28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년 4월 28일

보고자  민은기
(서명 또는 날인)

(주)공구우먼 귀중

사내이사 민은기 확인서_26 04 28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년 4월 28일

보고자  김익희
(서명 또는 날인)

(주)공구우먼 귀중

사내이사 김익희 확인서_26 04 28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 3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년 4월 28 일

보고자 진광용 (서명 또는 영인)



(주)공구우먼 귀중

사내이사 진광용 확인서_26 0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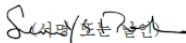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 3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년 4월 28 일

보고자 도운상 

(주)공구우먼 귀중

사외이사 도운상 확인서_26 04 28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이 병 두 (서명 또는 날인)



(주)공공우먼 귀중

사외이사 이병두 확인서_26 04 28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박 수 중 (서명 또는 날인)



(주)공공우먼 귀중

사외이사 박수중 확인서_26 04 28_1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이상훈 (서명 또는 날인) 

㈜공구우먼 귀중

기타비상무이사 이상훈 확인서_26 04 28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김도훈 

㈜공구우먼 귀중

기타비상무이사 김도훈 확인서_26 04 28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년 4월 28일

보고자 박치욱 (서명본인)

㈜공공우먼 귀중

기타비상무이사 박치욱 확인서_26 04 28

주4) 정정 후

(사외이사 후보자 2인,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2인 추가함)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기운	1976-01-31	사내이사	-	임원	이사회
민은기	1982-05-25	사내이사	-	-	이사회
김익희	1988-08-20	사내이사	-	-	이사회
진광용	1991-03-25	사내이사	-	-	이사회
도윤상	1975-09-20	사외이사	-	-	이사회
이병두	1956-02-29	사외이사	-	-	이사회
박수종	1975-05-23	사외이사	-	-	이사회
박그린	1994-02-27	사외이사	-	-	이사회
전병렬	1955-01-05	사외이사	-	-	이사회
이상훈	1969-07-22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김도훈	1983-09-27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박치욱	1978-11-28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배상만	1966-02-03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반도현	1966-04-05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총 (14) 명					

본 이사 후보자 중에서 2026년 5월 27일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할 대상자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 용	
이기운	現 씨씨지인베스트먼트아시아(주) 대표이사	前 前	씨지에스씨아이엠비증권(주) IB부문 아시아 대표 씨아이엠비증권(주) IB부문 대표	-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前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주식부문장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민은기	現 AMD파트너스(주) 대표이사	前	한양증권(주) CIC대표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
김익희	現 (주)엘링크 대표이사	現	(주)지에프리테일 대표이사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 경제학과 졸업	-
진광용	現 (주)엘링크 총괄사업본부장	現	(주)지에프리테일 브랜드사업총괄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도윤상	現 리핀코트코리아(주) 대표이사	前 前	한국엑센츄어(주) (Accenture) 한국올리버와이먼(주) (Olliver Wyman)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
이병두	現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	前 前	삼정 KPMG 부회장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정치학 박사	-
박수중	現 대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	前 前	삼일회계법인 TAX 본부장 한올회계법인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
박그린	現 이피컴퍼니 대표	-	-	-
전병렬	-	前 前	재경부 및 금감위 FIU 제도운영과장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	-
이상훈	現 (주)에스엘엠앤씨 대표이사	-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졸업	-
김도훈	現 (주)사이렉스페이 대표이사	現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개발원 디지털전자금융 이사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졸업	-
박치욱	前 아르주청당 대표이사	前	아르주청당 대표이사	-
배상만	現 (주)몬스터 웁 대표이사	前 前	(주)지티지웰니스 대표이사 (주)비엔엘코퍼레이션 대표이사	-
반도현	現 S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前	한국감사협회 이사 / 감사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기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민은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익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진광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도윤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병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수중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그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전병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상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도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치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배상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반도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도윤상]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향후 성장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이병두]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오랜기간동안 사회 유수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로 해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박수종]

본 박수종 이사는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오랜기간 동안 공인회계사로서 근무해왔으며, 회계 및 재무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박그린]

본 박그린 이사는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패션업계에서 근무해왔으며, 현재는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패션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차원에서 성실히 맡은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전병렬]

본 전병렬 이사는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오랜기간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공직에서 근무해왔으며,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이기운, 민은기, 김익희, 진광용]

각 후보자들은 회사의 사업 구조와 운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실행력 있는 전략 추진,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또한, 금융, 투자, 패션, 유통에 대한 뛰어난 역량과 글로벌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도윤상, 이병두, 박수종, 박그린, 전병렬]

각 후보자들은 독립적인 시각과 균형 있는 판단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경영 전반에 대한 조연과 점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이상훈, 김도훈, 박치욱, 배상만, 반도현]

각 후보자들은 기타비상무이사로서 그 동안의 회사를 경영하면서 쌓은 노하우 및 IT전문가로 근무한 경험(김도훈) 등 각자 다른 전문영역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사회 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이 기 운

(서명 또는 날인)

(주)공구우먼 귀중

사내이사 이기운 확인서_26 04 28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민

은 기

(서명 또는 날인)

(주)공구우먼 귀중

사내이사 민은기 확인서_26 04 28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 3항 제 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항 제 3호부터 제 5호까지의 사항

2026년 4월 28일

보고자 김익희 (서명 또는 인인)


(주)공공우먼 귀중

사내이사 김익희 확인서_26 04 28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 3항 제 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항 제 3호부터 제 5호까지의 사항

2026년 4월 28일

보고자 진광용 (서명 또는 인인)


(주)공공우먼 귀중

사내이사 진광용 확인서_26 0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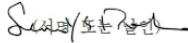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도윤상 

(주)공구우먼 귀중

사외이사 도윤상 확인서_26 0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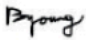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이 병 두 (서명 또는 날인)


(주)공구우먼 귀중

사외이사 이병두 확인서_26 04 28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년 4월 28일

보고자 박수중

(서명 또는 날인)


㈜공구우먼 귀중

사외이사 박수중 확인서_26 04 28_2

확 인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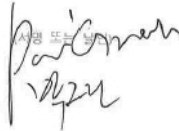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년 5월 12일

보고자 박그린

(서명 또는 날인)


㈜공구우먼 귀중

사외이사 박그린 확인서_26 05 12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5 월 12 일

보고자 전 병 렬 

(주)공구우먼 귀중

사외이사 전병렬 확인서_26 05 12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이상훈 (서명 또는 날인) 

(주)공구우먼 귀중

기타비상무이사 이상훈 확인서_26 04 28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김도훈 

㈜공구우먼 귀중

기타비상무이사 김도훈 확인서_26 04 28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4 월 28 일

보고자 박치욱 

㈜공구우먼 귀중

기타비상무이사 박치욱 확인서_26 04 28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5 월 12 일

보고자 배 상 만



㈜공공우먼 귀중

기타비상무이사 배상만 확인서_26 05 12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아래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 조 제 3 항 제 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2.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3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

2026 년 5 월 12 일

보고자 반 도 현



㈜공공우먼 귀중

기타비상무이사 반도현 확인서_26 05 12